

---

# 연말정산 간소화자료

## 「일괄제공서비스」 설명자료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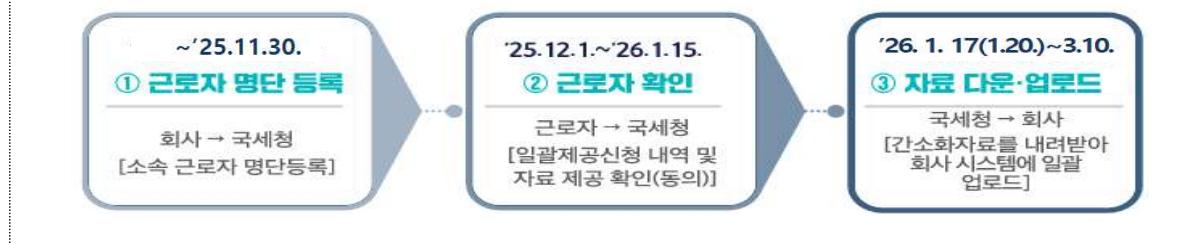
2025. 11.

## I

# 일괄제공서비스 개요 및 개선사항 안내

- 「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」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확인(동의)한 경우 간소화자료(부양가족 포함)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-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회사 시스템에서 손쉽게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어 자료 제출안내·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듭니다.
- 「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」를 아래와 같이 개선했습니다.
- '25년 소득금액\*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)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합니다.  
\* (근로) 상반기 소득금액, (사업·기타·퇴직·양도) 10월 제출·신고분까지 반영
- 소득기준초과\* 또는 '24.12.31.이전 사망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외하고 일괄제공 됩니다.  
\*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·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
- 홈택스를 아이디로 로그인한 근로자의 자료제공 등의 방법에 공인인증서, 민간인증서(카카오톡, 토스 등)외에 휴대전화(문자) 인증을 추가하였습니다.
-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,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.

## 일괄제공서비스 일정(25년기준)



## II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

1단계

### 근로자 명단등록 (회사→국세청, 11.30.까지)

-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받고자 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\*을 11.30.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.  
\*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, 중도퇴사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
- 11.30.까지 등록하지 못했거나 입·퇴사자 등으로 이미 등록한 명단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1.10.까지 추가 등록·제외가 가능합니다.
- 회사 일정에 맞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받는 일자를 1.17. 또는 1.20. 중 선택 가능합니다.
- 근로자 명단등록은 연말정산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원클릭으로 재등록하거나 명단 수정(추가·제외)할 수 있으며 전체 삭제도 가능합니다.
- 회사는 엑셀서식에 근로자 명단을 작성해 홈택스에 업로드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, 상기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
#### 【참고1】(간소화자료 일괄제공) 근로자 명단 등록·관리 방법

- 명단등록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괄제공받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\*(4자리 숫자)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.  
\* 분실 시 홈택스의 '(회사용) 일괄제공 신청/관리' 화면에서 확인 가능
- 회사 기장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세무대리인\*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 
\*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수임 세무대리인 홈택스 등록 필요

## 2단계

### 자료제공 확인(동의) [근로자 → 국세청, 1.15.까지]

- 근로자는 12. 1.부터 1. 15.까지 홈택스(또는 손택스)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(동의)해야 합니다.
- 최초 1회만 확인(동의)하면 퇴직 시까지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합니다.  
\* 자료제공 취소는 '(근로자용) 일괄제공 동의/조회/취소' 화면에서 취소 가능
- 자료제공 확인(동의)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절차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(동의)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회사에 간편하게 일괄제공합니다.
  - 다만,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\*의 간소화자료는 제외하고 일괄 제공하고 있으니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① '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)을 초과 →(근로) 상반기 소득금액, (사업·기타·퇴직·양도) 10월 신고분까지 포함
  - ② '24.12.31.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
-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,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으므로 간소화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공제 가능합니다.

## 3단계

### 자료 내려받기 (국세청 → 회사, 1.17. 또는 1.20. ~ 3.10.)

- 국세청은 1.17. 또는 1.20.부터 3.10.까지 간소화자료 압축파일을 홈택스에서 제공하며, 회사는 이를 내려 받아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됩니다. 다만, 특정일에 신청회사가 집중되는 경우 순차적으로 제공합니다.
-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며, 압축파일 1개당 최대 5GB 분량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- 근로자는 일괄제공된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\*이 있는 경우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. (\* 수동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등)